

#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1992. 3. 7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문교사회위원회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2년 2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1992년 2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제76회 임시회

○ 제 1차 문교사회위원회 (1992. 3. 5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 제안설명자 관리국장 김근학 )

#### 가 제안이유

학교신설,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본교폐지, 분교장격하, 분교장폐지, 행정구역 변경, 학과개편등으로 충청북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변경이 불가피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## 나 주요골자

- 학교신설 (청주외국어고등학교외 6교)
- 본교폐지 (충주 - 복성국민학교)
- 분교장격하 학교 (수통국민학교외 14교)
- 분교장폐지 학교 (복일국민학교 청애원분교장외 19교)
- 학과개편에 따른 교명변경 학교 (증평여자고등학교외 1교)
- 위치이전 학교 (목도중학교)
- 행정구역 변경지역 학교 (추풍령국민학교외 4교)
-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학교 (봉정국민학교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김영만)

농촌지역의 이농현상과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따른 교육인구의 이동과 지역명칭의 변경등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.

- 가. 영동군 면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(91.7.5 제1332호)로 황금면이 추풍령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소가 변경되고
- 나. 단양군 단성면 설치와 읍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(91.12.31 제1301호)에 따른 주소 변경.
- 다. 택지개발지구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로 주소가 변경되었음.
- 라.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계획안 및 본교폐지, 분교장폐지, 분교장 격하기준(대통령령)에 의하고,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,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5. 토론 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.

7. 소수 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8.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

가. 개정 조례안.

나. 신.구문 대비표.